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관련 규정 개정 등

황현아 연구위원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음. 입법예고안 및 개정 약관은 지난 3월 19일 금융위·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내용에 따른 것으로, (i) 의무보험 관련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ii) 임의보험 관련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부담금 도입, (iii) 카풀 관련 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iv)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한편, 보험회사의 해외자산 운용비율 상향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의무보험) 상향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됨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회사는 음주운전자에게 대인손해의 경우 300만 원, 대물손해의 경우 100만 원까지 구상을 할 수 있음<sup>1)</sup>
  - 사고부담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피보험자에게 구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함
  - 현재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의무)<sup>2)</sup>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피보험자에게 대인손해 300만 원, 대물손해 100만 원 범위에서 사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sup>3)</sup>
- 개정안은 의무보험에 적용되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대인손해의 경우 1,000만 원, 대물손해의 경우 500만 원으로 상향함
  - 무면허·뺑소니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종전과 동일함
- 입법예고안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기대되고, 부수적으로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 대물배상은 2천만 원까지는 의무보험, 그 초과 부분은 임의보험임  
 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20. 6. 1. 시행)〉

### ■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 관련 사고부담금(임의보험)이 도입됨

- 현재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 시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사고부담금은 의무보험에 적용되는 것이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임의)의 경우 별도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2020년 4월 29일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 시 대인배상II의 경우 1억 원, 대물배상(임의)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함<sup>4)</sup>
  - 무면허사고는 개정 전 약관상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임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sup>5)</sup>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제외되고 사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
- 자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 6,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A의 음주운전으로 대인손해 2억 원, 대물손해 5천만 원이 발생하여 A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험사는 A에게 대인손해 관련 6천만 원, 대물손해 관련 3,5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음
  - 대인 사고부담금(대인I 보상액 1억 5천만 원, 대인II 보상액 5천만 원):  
6천만 원 = {대인I 사고부담금 1천만 원} + {대인II 사고부담금 5천만 원}
  - 대물 사고부담금(대물(의무) 보상액 2천만 원, 대물(임의) 보상액 3천만 원):  
3,500만 원 = {대물(의무) 사고부담금 5백만 원} + {대물(임의) 사고부담금 3천만 원}
- 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의무를 부담하지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고부담금 상당액 범위에서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
  - 단, 피보험자가 무자력인 경우 현실적으로 구상이 불가능하여 최종손실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됨

〈표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예시(대인손해 2억 원, 대물손해 5천만 원인 경우)

항목	지급 보험금	사고부담금(현행)	사고부담금(변경) <sup>6)</sup>	보험사 최종부담
대인배상 I	15,0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14,000만 원
대인배상 II	5,000만 원	없음	5,000만 원	없음
대물배상(의무)	2,0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대물배상(임의)	3,000만 원	없음	3,000만 원	없음
합계	25,000만 원	400만 원	9,500만 원	15,500만 원

4)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

5) 개정 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함

■ 출퇴근시간에 이루어지는 유상 카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상 공백 우려를 해소함

- 기존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유상운송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어<sup>7)</sup> 카풀 앱 등을 통해 유상으로 카풀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음<sup>8)</sup>
- 개정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평일 출퇴근시간대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카풀을 한 경우에는 유상운송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보장 공백 문제를 해소함<sup>9)</sup>
- 금융위는 카풀을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고려하여, 추후 카풀의 위험률 차이가 통계적으로 입증될 경우 별도 특약으로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sup>10)</sup>

■ 군복무중인 군인의 급여도 상실수익액 산정 시 반영하도록 함

- 기존에는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 시 군복무 기간이 제외되었는데, 이러한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정 표준약관은 현역병 등 군 복무 해당자의 경우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을, 군 복무 예정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을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함<sup>11)</sup>

〈보험업법 개정(2020. 11. 20. 시행)〉

■ 보험회사의 해외자산 운영비율 상향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5월 19일 공포되었고,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법은 외화자산 운용비율 규제 개선, 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함<sup>12)</sup> **kiri**

7)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제7호

8) 황현아(2019. 3. 25),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KIRI 리포트』, 포커스

9)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제7호 나목

10) 관계부처 합동(2020. 3),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p. 11

11)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부분

12) 개정 보험업법 주요내용은 「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금융소비자보호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보험업법」, 『KIRI 보험법리뷰』, 제4호, 보험법 동향 참조